|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  **공증활동과 관련한 민사안건 심리에 대한 몇 가지 규정**  법석 [2014]6호  <공증활동과 관련한 민사안건 심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이 2014년 4월 28일의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1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4년 5월 16일  공증활동과 관련한 민사안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고 재판 실무를 참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자가 공증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증기구를 피고로 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 책임 분쟁안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제2조**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자가 청구사항의 변경, 공증서 취소 또는 공증서 무효 확인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공증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그 공증서를 발급한 공증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고지한다.  **제3조**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자가 공증서에서 공증한 민사권리의무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공증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그 분쟁과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자가 강제적 집행효력을 가지는 공증 채권문서의 민사권리 의무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증 채권문서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지 않기로 재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공증기구 및 그 공증원이 공증 과정에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공증기구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1) 진실하지 않거나 합법적이 아닌 사항에 대해 공증서를 발급한 경우  (2) 공증서 또는 공증 보존서류를 훼손, 개찬한 경우  (3) 업무 종사 중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한 경우  (4) 공증절차 또는 공증규칙, 그리고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에서 제정한 업계 규범을 위반하고 공증서를 발급한 경우  (5) 공증기구가 공증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 대조확인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여 공증서의 오류 또는 부실을 초래한 경우  (6) 오류가 있는 공증서에 대해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자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법률, 법규,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한 기타의 상황.  **제5조** 당사자가 허위 증명서류로 공증을 신청하여 공증서의 오류를 초래하고 타인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 당사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공증기구가 법적 심사, 대조확인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법적 심사, 대조확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실에 상당하는 보완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공증 증명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당사자의 악의적 결탁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연대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6조**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자가 공증기구에서 발급한 공증서류가 부실, 불합격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사용하여 자기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공증기구에 배상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규정을 시행한 후 공증활동과 관련한 민사안건의 심사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심시가 종료되어 당사자가 재심의 또는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涉及公证活动相关民事案件的若干规定**  法释〔2014〕6号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及公证活动相关民事案件的若干规定》已于2014年4月28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14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6月6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4年5月16日  　　为正确审理涉及公证活动相关民事案件，维护当事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中华人民共和国公证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等法律的规定，结合审判实践，制定本规定。  **第一条** 当事人、公证事项的利害关系人依照公证法第四十三条规定向人民法院起诉请求民事赔偿的，应当以公证机构为被告，人民法院应作为侵权责任纠纷案件受理。  **第二条** 当事人、公证事项的利害关系人起诉请求变更、撤销公证书或者确认公证书无效的，人民法院不予受理，告知其依照公证法第三十九条规定可以向出具公证书的公证机构提出复查。  **第三条** 当事人、公证事项的利害关系人对公证书所公证的民事权利义务有争议的，可以依照公证法第四十条规定就该争议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  　　当事人、公证事项的利害关系人对具有强制执行效力的公证债权文书的民事权利义务有争议直接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的，人民法院依法不予受理。但是，公证债权文书被人民法院裁定不予执行的除外。  **第四条** 当事人、公证事项的利害关系人提供证据证明公证机构及其公证员在公证活动中具有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应当认定公证机构有过错：  　　（一）为不真实、不合法的事项出具公证书的；  　　（二）毁损、篡改公证书或者公证档案的；  　　（三）泄露在执业活动中知悉的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的；  　　（四） 违反公证程序、办证规则以及国务院司法行政部门制定的行业规范出具公证书的；  　　（五）公证机构在公证过程中未尽到充分的审查、核实义务，致使公证书错误或者不真实的；  　　（六）对存在错误的公证书，经当事人、公证事项的利害关系人申请仍不予纠正或者补正的；  　　（七）其他违反法律、法规、国务院司法行政部门强制性规定的情形。  **第五条** 当事人提供虚假证明材料申请公证致使公证书错误造成他人损失的，当事人应当承担赔偿责任。公证机构依法尽到审查、核实义务的，不承担赔偿责任；未依法尽到审查、核实义务的，应当承担与其过错相应的补充赔偿责任；明知公证证明的材料虚假或者与当事人恶意串通的，承担连带赔偿责任。  **第六条** 当事人、公证事项的利害关系人明知公证机构所出具的公证书不真实、不合法而仍然使用造成自己损失，请求公证机构承担赔偿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七条** 本规定施行后，涉及公证活动的民事案件尚未终审的，适用本规定；本规定施行前已经终审，当事人申请再审或者按照审判监督程序决定再审的，不适用本规定。 |